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윤준병 · 임미애
전용기 · 이상식 · 황명선
이수진 · 강준현 · 한정애
문대림 · 서미화 · 오세희
전종덕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 훼손이나 농지 전용 등 환경·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개발된 공간과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.

그러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변에는 도로 개설 과정에서 조성된 비탈면, 녹지대, 방음벽, 옹벽 및 기타 유휴공간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「도로법」에는 이러한 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.

이에 도로의 본래 기능과 구조적 안전성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또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.

아울러 비탈면 안정성, 배수 기능, 교통안전, 유지·보수 및 재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, 발전시설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·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안전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화시키려는 것이다.

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발굴·추진하고, 지역주민 참여 및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상생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이다.

주요내용

가. 도로의 비탈면, 녹지대, 방음벽, 옹벽, 교량 및 그 밖의 도로시설 중 도로의 본래 기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“도로 유희공간”으로 정의함(안 제2조).

나.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와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유희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1조의2제1항).

다.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유희 비탈면, 도로변 녹지대, 방음벽, 옹벽, 교량 및 고가도로 주변 등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대상 공간으로 규정함(안 제61조의2제2항).

라. 도로 유희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도로

관리청이 필요한 범위에서 도로 유희공간의 사용 또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1조의2제3항).

마.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도로 구조적 안전성, 교통안전, 비탈면 안정성, 배수 기능, 재난 위험, 전기안전 및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함(안 제61조의2제4항).

바. 발전시설로 인해 도로의 구조, 교통안전 또는 유지·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이전·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(안 제61조의2제6항 및 제7항).

사. 도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발굴하고, 입지조사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1조의3제1항 및 제3항).

아. 도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발전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1조의3제2항).

자. 발전사업자가 시설의 안전관리, 재난 대응, 화재·전기안전 및 철거·원상회복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61조의4).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“도로 유희공간”이란 도로의 구조 및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서 도로의 비탈면, 녹지대, 중앙분리대, 방음벽, 옹벽, 교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시설의 상부 또는 주변 공간 중 도로의 본래 기능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공간을 말한다.

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1조의2(도로 유희공간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)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및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 유희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유희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.

1.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비탈면 중 붕괴·낙석 등 재해의 위험이 없고 도로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
2. 도로변 녹지대 및 완충녹지 중 도로의 유지·관리와 교통안전에

지장이 없는 공간

3. 방음벽, 옹벽 등 도로시설물의 상부 또는 주변 공간
4. 교량 및 고가도로의 하부 또는 주변 공간 중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 검토 결과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공간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희공간

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도로 유희공간을 사용하게 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도로의 구조적 안전성
2. 교통안전 및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
3. 비탈면의 안정성 및 배수 기능
4. 도로의 유지·보수 및 제설 등 관리업무에 미치는 영향
5. 산사태, 낙석, 침수 및 화재 등 재난 발생 가능성
6. 발전시설의 전기적 안전성 및 화재 예방 대책
7. 경관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⑤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도로 유희공간에 대한 출입 및 시설물의 유지·관리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.

⑥ 도로관리청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도로의 구조, 교통안전 또는 유지·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이전·철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해당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철거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1조의3(도로 유휴공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우선 추진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
1.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변 유휴 비탈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
2. 도로변 녹지대 및 완충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
3. 방음벽 및 도로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
4. 도로시설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발전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 유희공간의 발굴, 입지조사, 타당성 조사 및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1조의4(도로 유희공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관리) ① 도로 유희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한 유지·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발전시설의 유지·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
2. 비탈면 및 옹벽 등 도로 구조물의 안전관리 사항
3. 집중호우, 태풍, 폭설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사항
4. 화재 및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
5. 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도로 유희공간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 유희공간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간에 설치·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도로 유희공간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9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“도로 유희공간”이란 도로의 구조 및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서 도로의 비탈면, 녹지대, 중앙분리대, 방음벽, 옹벽, 교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시설의 상부 또는 주변 공간 중 도로의 본래 기능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공간을 말한다. <u>제61조의2(도로 유희공간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) ①</u> <u>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및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 유희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</u>
<u><신설></u>	

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유희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.

1.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비탈면 중 붕괴·낙석 등 재해의 위험이 없고 도로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

2. 도로변 녹지대 및 완충녹지 중 도로의 유지·관리와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공간

3. 방음벽, 옹벽 등 도로시설물의 상부 또는 주변 공간

4. 교량 및 고가도로의 하부 또는 주변 공간 중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 검토 결과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공간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희공간

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도로 유희공간을 사용하게 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

를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도로의 구조적 안전성
2. 교통안전 및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
3. 비탈면의 안정성 및 배수 기능
4. 도로의 유지·보수 및 제설 등 관리업무에 미치는 영향
5. 산사태, 낙석, 침수 및 화재 등 재난 발생 가능성
6. 발전시설의 전기적 안전성 및 화재 예방 대책
7. 경관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⑤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에 대한 출입 및 시설물의 유지·관리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.

⑥ 도로관리청은 재생에너지

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도로의 구조, 교통안전 또는 유지·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이전·철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해당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철거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61조의3(도로 유희공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우선 추진

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
1.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변 유희 비탈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

2. 도로변 녹지대 및 완충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

3. 방음벽 및 도로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

4. 도로시설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발전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 유희공간의

<신 설>

발굴, 입지조사, 타당성 조사 및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1조의4(도로 유희공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관리) ① 도로 유희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절한 유지·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발전시설의 유지·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
2. 비탈면 및 옹벽 등 도로 구조물의 안전관리 사항
3. 집중호우, 태풍, 폭설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사항
4. 화재 및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
5. 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사항

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
발전시설의 관리상태를 정기적
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, 필요한
경우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
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시정조
치를 요구할 수 있다.